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 분양문의 : 1533-4077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당첨자발표일로부터)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3.13.(금)	2026.03.23.(월)	2026.03.24.(화)	2026.03.25.(수)	2026.04.01.(수)	2026.04.03.(금)~ 2026.04.07.(화)	2026.04.13.(월)~ 2026.04.15.(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jp-raon.com>)에 공개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 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년 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특별공급 / 1, 2순위)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2025.10.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초등학생은 석현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입니다.
- 중학생은 기흥중학교 개교 시 기흥3중학군에 배치 예정입니다.
- 고등학생은 용인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 예정입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3.1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용인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3.23.(월)	2026.03.24.(화)	2026.03.25.(수)	2026.04.01.(수)	2026.04.03.(금)~ 2026.04.07.(화)	2026.04.13.(월)~ 2026.04.15.(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 대표번호 : Tel. 1533-4077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지역, 비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4.01.)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준일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	6개월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상기 외 주택소유자에게 공급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납부 대상이며, 발코니 확장 계약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인지세법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1조 2항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균등하게 부담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세청 소비세과(☎044-204-3372~5)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부동산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

1)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액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의거)

기재금액	납부세액	계약자 (50%)	사업주체 (50%)	비고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1만원	1만원	계약자 / 사업주체 각각 50% 납부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2만원	2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3만 5천원	3만 5천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7만 5천원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17만 5천원	17만 5천원	

2)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액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에 의거)

기재금액	납부세액	계약자 (50%)	사업주체 (50%)	비고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1만원	1만원	계약자 / 사업주체 각각 50% 납부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2만원	2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3만 5천원	3만 5천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7만 5천원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17만 5천원	17만 5천원	

-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분양권 전매 등 해당 없음)에 한해서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며, 사업주체 부담분의 수입인지는 입주 시 별도 교부 예정입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③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④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청 공동주택과 - 6273호(2026.03.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7층 7개동 일반분양 총 238세대 / 주차대수 세대당 1.52대(공동주택 363대/ 근린생활시설 4대)
[특별공급 93세대(기관추천 15세대, 다자녀가구 24세대, 신혼부부 33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1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044	01	084.6802A	84A	84.6802	27.7248	112.4050	59.8074	172.2124	67.1289	83	9	9	19	3	7	47	36	4
	02	084.6968B	84B	84.6968	27.7258	112.4226	59.8190	172.2416	67.1420	42	4	4	10	2	4	24	18	2
	03	084.6402C	84C	84.6402	27.6245	112.2647	59.7790	172.0437	67.0972	18	2	2	4	-	2	10	8	-
	04	103.8844A	103A	103.8844	25.4281	129.3125	73.3708	202.6833	82.3527	10	-	1	-	-	-	1	9	-
	05	103.8844B	103B	103.8844	25.4281	129.3125	73.3708	202.6833	82.3527	2	-	-	-	-	-	-	2	-
	06	116.6358	116	116.6358	27.0806	143.7164	82.3768	226.0932	92.4612	21	-	2	-	1	-	3	18	-
	07	119.1573A	119A	119.1573	27.8572	147.0145	84.1577	231.1722	94.4600	41	-	4	-	1	-	5	36	4
	08	119.1573B	119B	119.1573	27.8572	147.0145	84.1577	231.1722	94.4600	21	-	2	-	1	-	3	18	-
합 계										238	15	24	33	8	13	93	145	10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면적과 대지지분은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공부정리 결과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공동현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아파트입면 색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계획변경,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금액표

[단위 : 세대, 원]

주 번	동 별	공 급 세 대 수	구 분	해 당 세 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 금 (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 내	2026.06.19	2026.10.16.	2027.02.19.	2027.06.18.	2027.09.17.	2027.12.17.		
84A	101동,102동,103동4호	34	1F테라스	3	414,960,000	383,040,000	-	798,000,000	10,000,000	6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79,800,000	239,400,000	
	1			400,400,000	369,600,000	-	770,000,000	10,000,000	6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231,000,000	
	101동4호 102동4호 103동4호 107동3,6호		2F	5	389,480,000	359,520,000	-	749,000,000	10,000,000	6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224,700,000
			3~4F	10	395,720,000	365,280,000	-	761,000,000	10,000,000	6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76,100,000	228,300,000
			5~6F	10	399,880,000	369,120,000	-	769,000,000	10,000,000	6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230,700,000
			7F	5	405,600,000	374,400,000	-	780,000,000	10,000,000	6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234,000,000
	101동,102동,103동2호	49	1F테라스	3	404,040,000	372,960,000	-	777,000,000	10,000,000	6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77,700,000	233,100,000	
	107동1호			1	396,760,000	366,240,000	-	763,000,000	10,000,000	6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228,900,000	
	101동,102동,103동1호		1F	3	373,880,000	345,120,000	-	719,000,000	10,000,000	6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215,700,000	
	101동1,2호 102동1,2호 103동1,2호 107동1호		2F	7	379,600,000	350,400,000	-	730,000,000	10,000,000	6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19,000,000
			3~4F	14	385,320,000	355,680,000	-	741,000,000	10,000,000	6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22,300,000
			5~6F	14	389,480,000	359,520,000	-	749,000,000	10,000,000	6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224,700,000
7F		7	395,200,000	364,800,000	-	760,000,000	10,000,000	6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76,000,000	228,000,000		
84B	101동,102동,103동3호	35	1F테라스	3	430,560,000	397,440,000	-	828,000,000	10,000,000	7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248,400,000	
	107동4,5호			1F	2	391,560,000	361,440,000	-	753,000,000	10,000,000	6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225,900,000
	101동3호 102동3호 103동3호 107동4,5호		2F	5	397,800,000	367,200,000	-	765,000,000	10,000,000	6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29,500,000
			3~4F	10	403,520,000	372,480,000	-	776,000,000	10,000,000	6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232,800,000
			5~6F	10	408,200,000	376,800,000	-	785,000,000	10,000,000	6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235,500,000
			7F	5	413,400,000	381,600,000	-	795,000,000	10,000,000	6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79,500,000	238,500,000
	107동2호	7	1F테라스	1	412,360,000	380,640,000	-	793,000,000	10,000,000	6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79,300,000	237,900,000
		2F	1	387,400,000	357,600,000	-	745,000,000	10,000,000	6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74,500,000	223,500,000	
		3~4F	2	393,120,000	362,880,000	-	756,000,000	10,000,000	6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75,600,000	226,800,000	
		5~6F	2	397,800,000	367,200,000	-	765,000,000	10,000,000	6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29,500,000	
		7F	1	403,000,000	372,000,000	-	775,000,000	10,000,000	6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232,500,000	
	84C	104T동2호 105T동,106T동 3호,4호	15	1F테라스	5	405,600,000	374,400,000	-	780,000,000	10,000,000	6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234,000,000
2		397,800,000			367,200,000	-	765,000,000	10,000,000	6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29,500,000	
104T동2,3호 105T동,106T동 2,3,4호		3	2F테라스	8	409,760,000	378,240,000	-	788,000,000	10,000,000	6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78,800,000	236,400,000	
107T동1호				1F테라스	1	387,920,000	358,080,000	-	746,000,000	10,000,000	6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74,600,000	223,800,000
107T동1호				2F테라스	1	399,360,000	368,640,000	-	768,000,000	10,000,000	6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76,800,000	230,400,000
107T동2호				1	384,280,000	354,720,000	-	739,000,000	10,000,000	6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73,900,000	221,700,000
103A	101T동,102T동 1,2호	10	1F테라스	4	453,490,000	404,100,000	40,410,000	898,000,000	10,000,000	7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89,800,000	269,400,000	
	101T동,102T동, 103T동 1,2호		2F테라스	6	458,540,000	408,600,000	40,860,000	908,000,000	10,000,000	8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90,800,000	272,400,000	
103B	103T동1호,2호	2	1F	2	418,140,000	372,600,000	37,260,000	828,000,000	10,000,000	7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248,400,000	
116	104동,105동 106동3호	21	1F테라스	3	535,300,000	477,000,000	47,700,000	1,060,000,000	10,000,000	9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106,000,000	318,000,000	
			2F	3	493,890,000	440,100,000	44,010,000	978,000,000	10,000,000	87,800,000	97,800,000	97,800,000	97,800,000	97,800,000	97,800,000	97,800,000	293,400,000	
			3~4F	6	501,465,000	446,850,000	44,685,000	993,000,000	10,000,000	89,300,000	99,300,000	99,300,000	99,300,000	99,300,000	99,300,000	99,300,000	297,900,000	

			5~6F	6	507,020,000	451,800,000	45,180,000	1,004,000,000	10,000,000	90,400,000	100,400,000	100,400,000	100,400,000	100,400,000	100,400,000	301,200,000	
			7F	3	514,090,000	458,100,000	45,810,000	1,018,000,000	10,000,000	91,8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305,400,000	
119A	104동,105동, 106동4호	20	1F테라스	2	546,915,000	487,350,000	48,735,000	1,083,000,000	10,000,000	9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108,300,000	324,900,000
			2F	3	504,495,000	449,550,000	44,955,000	999,000,000	10,000,000	89,90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299,700,000
			3~4F	6	512,575,000	456,750,000	45,675,000	1,015,000,000	10,000,000	91,500,000	101,500,000	101,500,000	101,500,000	101,500,000	101,500,000	101,500,000	304,500,000
			5~6F	6	518,130,000	461,700,000	46,170,000	1,026,000,000	10,000,000	92,600,000	102,600,000	102,600,000	102,600,000	102,600,000	102,600,000	102,600,000	307,800,000
			7F	3	525,200,000	468,000,000	46,800,000	1,040,000,000	10,000,000	9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104,000,000	312,000,000
	104동,105동1호	14	1F	2	484,295,000	431,550,000	43,155,000	959,000,000	10,000,000	85,900,000	95,900,000	95,900,000	95,900,000	95,900,000	95,900,000	95,900,000	287,700,000
			2F	2	491,870,000	438,300,000	43,830,000	974,000,000	10,000,000	87,400,000	97,400,000	97,400,000	97,400,000	97,400,000	97,400,000	97,400,000	292,200,000
			3~4F	4	499,445,000	445,050,000	44,505,000	989,000,000	10,000,000	88,900,000	98,900,000	98,900,000	98,900,000	98,900,000	98,900,000	98,900,000	296,700,000
			5~6F	4	504,495,000	449,550,000	44,955,000	999,000,000	10,000,000	89,90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99,900,000	299,700,000
			7F	2	511,565,000	455,850,000	45,585,000	1,013,000,000	10,000,000	91,300,000	101,300,000	101,300,000	101,300,000	101,300,000	101,300,000	101,300,000	303,900,000
	106동1호	7	1F	1	466,115,000	415,350,000	41,535,000	923,000,000	10,000,000	8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92,300,000	276,900,000
			2F	1	473,185,000	421,650,000	42,165,000	937,000,000	10,000,000	8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281,100,000
			3~4F	2	480,255,000	427,950,000	42,795,000	951,000,000	10,000,000	85,100,000	95,100,000	95,100,000	95,100,000	95,100,000	95,100,000	95,100,000	285,300,000
			5~6F	2	485,810,000	432,900,000	43,290,000	962,000,000	10,000,000	8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288,600,000
			7F	1	492,375,000	438,750,000	43,875,000	975,000,000	10,000,000	8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292,500,000
119B	104동,105동, 106동2호	21	1F테라스	3	512,575,000	456,750,000	45,675,000	1,015,000,000	10,000,000	91,500,000	101,500,000	101,500,000	101,500,000	101,500,000	101,500,000	101,500,000	304,500,000
			2F	3	473,185,000	421,650,000	42,165,000	937,000,000	10,000,000	8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93,700,000	281,100,000
			3~4F	6	480,255,000	427,950,000	42,795,000	951,000,000	10,000,000	85,100,000	95,100,000	95,100,000	95,100,000	95,100,000	95,100,000	95,100,000	285,300,000
			5~6F	6	485,810,000	432,900,000	43,290,000	962,000,000	10,000,000	8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96,200,000	288,600,000
			7F	3	492,375,000	438,750,000	43,875,000	975,000,000	10,000,000	8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97,500,000	292,5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동은 저층테라스동(저층 테라스 타입)+상부일반주동이 수직으로 결합된 복합 주동 형태로 한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별도의 주동으로 표현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1동/101T동, 102동/102T동, 103동/103T동, 104동/104T동, 105동/105T동, 106동/106T동, 107동/107T동)

※ 테라스 동은 청약홈 시스템상 청약 당첨 시 아래의 동으로 표기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1T동=108동, 102T동=109동, 103T동=110동, 104T동=111동, 105T동=112동, 106T동=113동, 107T동=114동)

※ 103T동의 103B타입은 테라스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세대이니 참고하시어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테라스 동 외 상부 일반주동 1층에는 주택형별(타입) 테라스가 설계된 세대(일부 세대)가 있으나 테라스 타입으로 별도 표기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향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니,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임시사용승인(또는 동별 사용검사)을 통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잔금 납부 시 공급계약서 상 연체료를 적용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등은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2차 계약금에 대하여는 할인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 미적용)
- 중도금 및 잔금 선납할인율 및 연체료를 등은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님),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 시 발생하는 인지세 납부 증빙(수입인지)은 계약 시 납부해야 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원본서류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본 표시제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세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4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103A	116	119A	119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	-	-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	-	-	-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	-	-	-	-	2	
	장애인	경기도	2	1	-	-	-	-	-	3
		서울특별시	1	-	-	-	-	-	-	1
		인천광역시	1	-	-	-	-	-	-	1
중소기업 근로자	2	1	1	-	-	-	-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용인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5	2	1	1	1	2	1	13	
	서울, 인천 거주자(50%)	4	2	1	-	1	2	1	11	
신혼부부 특별공급		19	10	4	-	-	-	-	3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2	-	-	1	1	1	8	
생애최초 특별공급		7	4	2	-	-	-	-	13	
합 계		47	24	10	1	3	5	3	9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p style="text-align: center;">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p> <p style="text-align: center;">※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p> <p style="text-align: center;">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모두 부적격 처리</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무주택 요건</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p>청약통장 자격요건</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97 550 2072 710">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p>
추천기관	<p>■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p> <p>■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p> <p>■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p> <p>■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p>
당첨자 선정방법	<p>■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 50%(용인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용인시 거주자 우선]하며,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 건설지역(경기도 용인시)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배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배점항목</th> <th style="width: 10%;">총배점</th> <th colspan="2" style="width: 40%;">배점기준</th> <th style="width: 30%;">비고</th> </tr> <tr> <td></td> <td></td> <th style="width: 15%;">기준</th> <th style="width: 15%;">점수</th> <td></td>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3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공급 (2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공급 (1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용인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순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순위</th> <th style="width: 9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순위</td> <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용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3.13.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인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3">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수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용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금회 60㎡ 이하 주택형 공급이 없으므로 '단독세대' 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09 834 2128 1166">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용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3.13.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이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액(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p> <p>■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1순위</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315 520 2067 679"> <thead>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인천광역시(그 밖의 광역시)</th> <th>경기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서울특별시(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경기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경기도(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p> <p>-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p> <p>-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p> <p>-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p> <p>■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용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p> <p>■ ②가점</p> <p>-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p> <table border="1" data-bbox="315 986 2101 1086">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td> <td>100%</td> </tr> </tbody> </table> <p>-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p> <table border="1" data-bbox="309 1129 2116 1501">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10">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④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④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p>-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 장소 및 신청 방법	당첨자 발표일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6.03.23.(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건본주택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건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2026.04.01.(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일반공급	1순위	2026.03.24.(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6.03.25.(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4.01.(수) ~ 2026.04.10(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4.0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2026.04.03.(금)~2026.04.07.(화) 10:00 ~ 17:00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견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일반공급		

- ※ 당첨자에 한해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당사 분양 홈페이지(<https://www.yp-raon.com>)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공고문에 표기 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요구 할 수 있음)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 제출하여야 합니다.(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대표번호가 사용 중이신 통신사에 의해 스팸 등록되어, 서류제출 및 계약/예비입주자 추첨 등 기타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하신 경우 당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사전에 당사의 대표번호 스팸 등록 확인 및 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오기입과 통신사 스팸등록 등으로 계약 및 예비입주자 추첨 등 주요 일정 전달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동·호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인간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복무확인서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세대원 및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 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확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해당기관의추천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공개 “상세”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출산이행각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 조건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에 비치 -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특별공급 중 출산 특례에 해당하는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포함)
	○	소득증빙서류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26~27p 참조)
	○	비사업자확인각서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자녀로 신청한 경우 •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출산 이행 각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27p 참조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1년이상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기존주택 처분 조건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견본주택에 비치 -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특별공급 중 출산 특례에 해당하는 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 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모집공고일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기존주택 처분 조건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건본주택에 비치 -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특별공급 중 출산 특례에 해당하는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26p~27p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26p~27p 참조)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함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전원	
	○	비사업자확인각서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27p 참조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중인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생아(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을 포함)자녀로 신청한 경우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 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명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3.)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구분		소득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 후의 급여 신청서(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직인 날인)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전년도 전직(이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④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② 전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재직증명서	①, ② 세무서,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점	① 전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증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 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① 해당 직장,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근로소득자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프리랜서의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필수 제출	① 세무서, 해당 직장	
무직자(만19세 이상)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건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월별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로 소득기간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 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 소득증빙서류는 홈텍스 발급 및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구분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 (www.iros.go.kr)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ETAX, 위택스 (www.wetax.go.kr)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을 경우 전국 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번호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①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내역 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① 해당 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3.)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군복무기간(10년이상)명시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용인시)으로 당첨된 경우-군복무기간(25년이상)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 불가※해외에서 받은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입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미만엔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	위임장	본인	• 기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신청시 추가서류	○	신분증	대리인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도장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3.)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4.13.(월) ~ 2026.04.15.(수) (3일간) 10:00 ~ 16:00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견본주택(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54-9)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협	131-022-817010	코리아신택(주)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301홍길동'으로 기재)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기간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접수 장소에 비치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접수 장소에 비치(※ 6억 초과주택에 한함)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후 사본 제출 (사업주체 및 계약자 부담) • 수입인지 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파트 공급계약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해당)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시 35만원 (사업주체 및 계약자 부담(1/2)) 2) 발코니 확장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0,000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0,000원 그 외 법령 참조 (개별 부담) • 수입인지 구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인지세 납부 증명서 (정부수입인지)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위임장		
	○		신분증, 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고, 발코니 확장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5조3의 3항에 따라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조건으로 우선 공급 받은 경우, 기존 소유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하고, 본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하여야함. 이 경우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23조 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호수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1) 부부가 특별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단,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2) 부부 외 세대원이 특별공급에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동법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 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사업이며, 대출은 중도금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금융기관 대출 이용 계약자 한정)
- 상기의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개시일(변경 통지 시 변경일) 전일까지만 사업주체에서 이자를 대납하며, 입주개시일(변경 통지 시 변경일)부터는 금융기관의 지침을 준수하여 계약자가 직접 이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1,2차 계약금 전액을 얘기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 될 수 있으니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 하여야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 및 건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 대출 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 등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대출 일정 등)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발생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금 신고는 양도인이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전매 등)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분양권 전매(증여, 상속 포함) 절차 및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가정 아파트.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 및 별표1 제1호 가목2

- “소형·저가주택 등” 이란 전용면적 60㎡이하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 1억6천만원(비수도권 1억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됩니다.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이하 이 별표에서 같음)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처분 기준일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border="1" data-bbox="309 1136 2110 1295"> <thead> <tr> <th>조항</th> <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주거전용면적</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td> <td rowspan="3">85㎡ 이하</td> <td rowspan="3">5억원</td> <td rowspan="3">3억원</td> </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가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시	2026.06.19	입주지정일	
84A	34,300,000	3,430,000	3,430,000	27,440,000	-
84B	34,300,000	3,430,000	3,430,000	27,440,000	-
84C	32,000,000	3,200,000	3,200,000	25,600,000	-
103A	33,600,000	3,360,000	3,360,000	26,880,000	-
103B	33,600,000	3,360,000	3,360,000	26,880,000	-
116	39,000,000	3,900,000	3,900,000	31,200,000	-
119A	39,000,000	3,900,000	3,900,000	31,200,000	-
119B	39,000,000	3,900,000	3,900,000	31,200,000	-

2)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협	131-022-817034	코리아신탁(주)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등이 각각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람.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계약금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건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101동 301호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301홍길동'으로 / 102동 504호의 경우 '1020504홍길동'으로 기재)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02.18. 개정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관련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 하드웨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 개폐 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고,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 시트 카탈로그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 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선희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 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희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확장시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하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발코니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승인 후 발코니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를 사업주체와 1/2씩 부담하여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사시,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마감 연장, 주방 상판(엔지니어드 스톤), 거실 우물천장 적용, 펜트리 가구도어, 비데(욕실2) 등이 포함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선)**
 ※ **유상옵선 안내사항 (공통)**

- 유상옵선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해당 일정은 **추후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계약 해제 사유와 동일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유상옵선 계약은 본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유상옵선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선택품목 총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시공사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시공사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원상복구 및 제품 감가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하며 상기 금액은 기본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선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유상옵선 공급 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추가 계약 및 계약 해제 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유상옵선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유상옵선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 품목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상옵선 품목 대금에 대하여 시공사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유상옵선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선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선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선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 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 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선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1) 유상옵선 (①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 시스템 제습기 (드레스룸) / ② 선택형 패키지옵선(스타일업) / ③ 선택형 개별옵선)

①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 드레스룸 제습기 (※ 시스템 제습기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배관을 공유하므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추가 선택 가능합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옵선 명칭		설치대수	설치장소	제조사	공급금액	비 고
84A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무풍형)	2대	거실 + 침실1	삼성전자	3,970,000	-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삼성전자	7,250,000	-
		고급형 (인피니트)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삼성전자	8,630,000	-
	시스템 제습기 (드레스룸)			침실1 드레스룸	삼성전자	1,480,000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선택가능
84B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무풍형)	2대	거실 + 침실1	삼성전자	4,030,000	-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삼성전자	6,960,000	-
		고급형 (인피니트)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삼성전자	8,330,000	-
	시스템 제습기 (드레스룸)			침실1 드레스룸	삼성전자	1,480,000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선택가능
84C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무풍형)	2대	거실 + 침실1	삼성전자	4,010,000	-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삼성전자	6,960,000	-
		고급형 (인피니트)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삼성전자	8,330,000	-
	시스템 제습기 (드레스룸)			침실1 드레스룸	삼성전자	1,480,000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선택가능
103A/103B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무풍형)	3대	거실 + 주방 + 침실1	삼성전자	5,210,000	-
			6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삼성전자	9,420,000	-
		고급형 (인피니트)	6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삼성전자	11,440,000	-
	시스템 제습기 (드레스룸)			침실1 드레스룸	삼성전자	1,480,000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선택가능
116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무풍형)	3대	거실 + 주방 + 침실1	삼성전자	5,770,000	-
			6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삼성전자	10,600,000	-
		고급형 (인피니트)	6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알파룸	삼성전자	12,650,000	-
	시스템 제습기 (드레스룸)			침실1 드레스룸	삼성전자	1,480,000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선택가능
119A/119B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일반형 (무풍형)	3대	거실 + 주방 + 침실1	삼성전자	6,190,000	-
			7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알파룸	삼성전자	11,540,000	-
		고급형 (인피니트)	7대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알파룸	삼성전자	13,880,000	-
	시스템 제습기 (드레스룸)			침실1 드레스룸	삼성전자	1,480,000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선택가능

※ 유상옵선 유의사항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 드레스룸 제습기)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선(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선)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선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선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유상옵선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천정내 각종 배관(소방, 환기 등) 시공에 따른 간섭 발생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타입별 공사비 산정 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선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실 및 침실1의 냉매배관과 해당 콘센트 등은 전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선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냉매배관만 시공됨. 설치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선 설치되지 않고, 추후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본 배관 계획의 변경은 불가하며, 냉매배관 박스설치로 인한 아트월 나누기도 및 침실, 도배부위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에 실내기와의 연결배관이 일부 노출되어 세대내 사용공간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본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은 불가하다는 사실,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 내부 냉난방을 위해 설치된 제품으로 이점 유의하시어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공사에 귀속되며, 설치가 진행되었을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옵션으로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 외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할 시 별도의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에 연결 할 경우 A/S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무상A/S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며, 소비자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1대당 리모컨 1개가 제공되며,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현장여건(전력 용량 등)에 따라 1개 이상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및 시스템제습기는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및 시스템제습기는 납품, 공정 일정 등의 사유로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에 작동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주시 정상 작동 예정입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거실 에어컨 위치가 기준층 거실 에어컨 위치가 상이하오니 유상 옵션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 상 에어컨 설치위치는 기준층(최상층 제외 세대)을 기준으로 표현되었으며, 최상층 세대는 제작사의 A/S 불가 등의 사유로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제습기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배관을 공유하므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추가 선택 가능합니다.
 - 시스템제습기의 컨트롤러는 M/H에 설치된 형태와 같이 유선 컨트롤러로 조작할 수 있으며, 무선 조작이 불가합니다.

② 선택형 패키지옵션 (스타일업)

[규격 단위 : mm / 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옵션 명칭	상세 내용	금 액	비 고 (미선택시 제공품목)	
84A	현관 스타일업	선택형 ①	바닥 타일 변경 (600*1200) + 3연동 슬라이딩도어(중문) + 시스템가구(현관창고)	2,970,000	· 바닥 타일 600*600 · 현관창고 도어만 제공 · 복도벽 도배마감
		선택형 ②	바닥 타일 변경 (600*1200) + 3연동 슬라이딩도어(중문) + 시스템가구(현관창고) + 복도 수납장	3,290,000	
	주방 스타일업	선택형 ①	아일랜드 식탁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 무선충전콘센트) + 싱크볼&싱크수전 업그레이드	3,010,000	· 아일랜드 식탁 미제공 · 3구가스쿠폱 & 침니형후드 (메인주방) ·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주방벽 타일 300*600
		선택형 ②	아일랜드 식탁 (세라믹 상판 & 유리 장식장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 무선충전콘센트) + 주방 상부장 플랩장&매립형 조명 + 주방 벽&상판 마감재 변경(세라믹타일)+ 싱크볼&싱크수전 업그레이드	8,470,000	
	비냉장고패키지	선택형 ①	빌트인 비스포크라인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수납장	7,110,000	· 도배마감 (콘센트 포함)
		선택형 ②	빌트인 인피니트라인 1도어 냉장고 + 1도어 냉동고 + 1도어 와인(또는 김치) 냉장고 + 맞춤형 수납장	16,750,000	
	거실 스타일업	기준층	아트월 타일 변경 (600*1200) + 복도벽 고급화(시트판넬)	3,030,000	· 아트월 타일 400*800 · 복도벽 도배마감
		최상층	아트월 타일 변경 (600*1200) + 복도벽 고급화(시트판넬)	3,790,000	
	욕실 스타일업	선택형 ①	벽 타일 변경 (600*600) / 바닥 타일 변경 (300*300)	1,750,000	· 벽 타일 : 300*600 · 바닥 타일 : 300*300

타입	옵션 명칭		상세 내용	금액	비고 (미선택시 제공품목)
		(공용욕실)	+ 도기&수전류 업그레이드 (American Standard) + 비데 추가 (American Standard)	1,190,000	· 도기&수전류 : 대림바스 · 비데 : 부부욕실만 설치 (제조사 : 대림바스) · 약세서리류 : 바스텍
		선택형 ② (부부욕실)	벽 타일 변경 (600*600) / 바닥 타일 변경 (300*300) + 도기&수전류&비데 업그레이드 (American Standard)		
		통합형 ③ (공용+부부욕실)	통합 제공 (선택형 ① + 선택형 ②)	2,850,000	
84B	현관 스타일업	선택형 ①	바닥 타일 변경 (600*1200) + 3연동 슬라이딩도어(중문) + 시스템가구(현관창고)	3,060,000	· 바닥 타일 600*600 · 현관창고 도어만 제공 · 복도벽 도배마감
		선택형 ②	바닥 타일 변경 (600*1200) + 3연동 슬라이딩도어(중문) + 시스템가구(현관창고) + 복도 수납장	3,360,000	
	주방 스타일업	선택형 ①	아일랜드 식탁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 무선충전콘센트) + 싱크볼&싱크수전 업그레이드	3,370,000	· 아일랜드 식탁 미제공 · 3구가스쿠포탑 & 침니형후드 (메인주방) ·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주방벽 타일 300*600
		선택형 ②	아일랜드 식탁 (세라믹 상판 & 유리 장식장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 무선충전콘센트) + 주방 상부장 플랩장&매립형 조명 + 주방 벽&상판 마감재 변경(세라믹타일)+ 싱크볼&싱크수전 업그레이드	10,620,000	
	비냉장고패키지	선택형 ①	빌트인 비스포크라인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수납장	6,910,000	· 도배마감 (콘센트 포함)
		선택형 ②	빌트인 인피니트라인 1도어 냉장고 + 1도어 냉동고 + 1도어 와인(또는 김치) 냉장고 + 맞춤형 수납장	16,840,000	
	거실 스타일업	기준층	아트월 타일 변경 (600*1200) + 복도벽 고급화(시트판넬)	3,180,000	· 아트월 타일 400*800 · 복도벽 도배마감
		최상층	아트월 타일 변경 (600*1200) + 복도벽 고급화(시트판넬)	4,040,000	
	욕실 스타일업	선택형 ① (공용욕실)	벽 타일 변경 (600*600) / 바닥 타일 변경 (300*300) + 도기&수전류 업그레이드 (American Standard) + 비데 추가 (American Standard)	1,750,000	· 벽 타일 : 300*600 · 바닥 타일 : 300*300 · 도기&수전류 : 대림바스 · 비데 : 부부욕실만 설치 (제조사 : 대림바스) · 약세서리류 : 바스텍
		선택형 ② (부부욕실)	벽 타일 변경 (600*600) / 바닥 타일 변경 (300*300) + 도기&수전류&비데 업그레이드 (American Standard)	1,190,000	
		통합형 (공용+부부욕실)	통합 제공 (선택형 ① + 선택형 ②)	2,850,000	
	84C	현관 스타일업	선택형 ①	바닥 타일 변경 (600*1200) + 3연동 슬라이딩도어(중문) + 시스템가구(현관창고)	2,650,000
선택형 ②			바닥 타일 변경 (600*1200) + 3연동 슬라이딩도어(중문) + 시스템가구(현관창고) + 복도 수납장	2,800,000	
주방 스타일업		선택형 ①	아일랜드 식탁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 무선충전콘센트) + 싱크볼&싱크수전 업그레이드	2,910,000	· 아일랜드 식탁 미제공 · 3구가스쿠포탑 & 침니형후드 (메인주방) ·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주방벽 타일 300*600
		선택형 ②	아일랜드 식탁 (세라믹 상판 & 유리 장식장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 무선충전콘센트) + 주방 상부장 플랩장&매립형 조명 + 주방 벽&상판 마감재 변경(세라믹타일) + 싱크볼&싱크수전 업그레이드	10,910,000	
비냉장고패키지		선택형 ①	빌트인 비스포크라인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수납장	6,520,000	· 도배마감 (콘센트 포함)
		선택형 ②	빌트인 인피니트라인 1도어 냉장고 + 1도어 냉동고 + 1도어 와인(또는 김치) 냉장고 + 맞춤형 수납장	16,470,000	
거실 스타일업		아트월 타일 변경 (600*1200) + 복도벽 고급화(시트판넬)	2,250,000	· 아트월 타일 400*800 · 복도벽 도배마감	
욕실 스타일업		선택형 ① (공용욕실)	벽 타일 변경 (600*600) / 바닥 타일 변경 (300*300) + 도기&수전류 업그레이드 (American Standard) + 비데 추가 (American Standard)	1,780,000	· 벽 타일 : 300*600 · 바닥 타일 : 300*300 · 도기&수전류 : 대림바스 · 비데 : 부부욕실만 설치 (제조사 : 대림바스) · 약세서리류 : 바스텍
		선택형 ② (부부욕실)	벽 타일 변경 (600*600) / 바닥 타일 변경 (300*300) + 도기&수전류&비데 업그레이드 (American Standard)	1,210,000	
		통합형 (공용+부부욕실)	통합 제공 (선택형 ① + 선택형 ②)	2,900,000	
103A	현관 스타일업	선택형 ①	바닥 타일 변경 (600*1200) + 3연동 슬라이딩도어(중문) + 시스템가구(현관창고)	2,640,000	· 바닥 타일 600*600

타입	옵션 명칭		상세 내용	금 액	비 고 (미선택시 제공품목)
/103B	주방 스타일업	선택형 ②	바닥 타일 변경 (600*1200) + 3연동 슬라이딩도어(중문) + 시스템가구(현관창고) + 복도 수납장	2,770,000	· 현관창고 도어만 제공 · 복도벽 도배마감
		선택형 ①	아일랜드 식탁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 무선충전콘센트) + 싱크볼&싱크수전 업그레이드	3,370,000	· 아일랜드 식탁 미제공 · 3구가스쿠포탑 & 침니형후드 (메인주방)
		선택형 ②	아일랜드 식탁 (세라믹 상판 & 유리 장식장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 무선충전콘센트) + 주방 상부장 플랩장&매립형 조명 주방 벽&상판 마감재 변경(세라믹타일) + 싱크볼&싱크수전 업그레이드	12,590,000	·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주방벽타일 300*600
	비냉장고패키지	선택형 ①	빌트인 비스포크라인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수납장	6,800,000	· 도배마감 (콘센트 포함)
		선택형 ②	빌트인 인피니트라인 1도어 냉장고 + 1도어 냉동고 + 1도어 와인(또는 김치) 냉장고 + 맞춤형 수납장	16,740,000	
	거실 스타일업		아트월 타일 변경 (600*1200) + 복도벽 고급화(시트판넬)	2,650,000	· 아트월 타일 400*800 · 복도벽 도배마감
	욕실 스타일업	선택형 ① (공용욕실)	벽 타일 변경 (600*600) / 바닥 타일 색상 변경 (300*300) + 도기&수전류 업그레이드 (American Standard) + 비데 추가 (American Standard)	1,780,000	· 벽 타일 : 300*600 · 바닥 타일 : 300*300 · 도기&수전류 : 대림바스 · 비데 : 부부욕실만 설치 (제조사 : 대림바스) · 약세서리류 : 바스텍
		선택형 ② (부부욕실)	벽 타일 변경 (600*600) / 바닥 타일 색상 변경 (300*300) + 도기&수전류&비데 업그레이드 (American Standard)	1,220,000	
		통합형 (공용+부부욕실)	통합 제공 (선택형 ① + 선택형 ②)	2,910,000	
	알파룸 스타일업		2연동 슬라이딩도어 변경	870,000	· 미선택 시 기본도어 제공(목창호)
116	현관 스타일업	선택형 ①	바닥 타일 변경 (600*1200) + 3연동 슬라이딩도어(중문) + 시스템가구(현관창고)	2,720,000	· 바닥 타일 600*600 · 현관창고 도어만 제공 · 복도벽 도배마감
		선택형 ②	바닥 타일 변경 (600*1200) + 3연동 슬라이딩도어(중문) + 시스템가구(현관창고) + 복도 수납장	3,270,000	
	주방 스타일업	선택형 ①	주방 하부장 (인덕션 & 독립형 후드 & 무선충전콘센트) + 싱크볼&싱크수전 업그레이드	1,750,000	· 3구가스쿠포탑 & 침니형후드 (메인주방) ·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주방벽타일 300*600
		선택형 ②	주방 하부장 (유리 장식장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 무선충전콘센트) + 주방 상부장 플랩장&매립형 조명 주방 벽&상판 마감재 변경(세라믹타일) + 싱크볼&싱크수전 업그레이드	6,810,000	
	비냉장고패키지	선택형 ①	빌트인 비스포크라인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수납장	7,270,000	· 도배마감 (콘센트 포함)
		선택형 ②	빌트인 인피니트라인 1도어 냉장고 + 1도어 냉동고 + 1도어 와인(또는 김치) 냉장고 + 맞춤형 수납장	17,180,000	
	거실 스타일업	기준층	아트월 타일 변경 (600*1200) + 복도벽 고급화(시트판넬)	4,770,000	· 아트월 타일 400*800 · 복도벽 도배마감
		최상층	아트월 타일 변경 (600*1200) + 복도벽 고급화(시트판넬)	5,730,000	
	욕실 스타일업	선택형 ① (공용욕실)	벽 타일 변경 (600*600) / 바닥 타일 변경 (300*300) + 도기&수전류 업그레이드 (American Standard) + 비데 추가 (American Standard)	1,780,000	· 벽 타일 : 300*600 · 바닥 타일 : 300*300 · 도기&수전류 : 대림바스 · 비데 : 부부욕실만 설치 (제조사 : 대림바스) · 약세서리류 : 바스텍
		선택형 ② (부부욕실)	벽 타일 변경 (600*600) / 바닥 타일 변경 (300*300) + 도기&수전류&비데 업그레이드 (American Standard)	1,130,000	
통합형 (공용+부부욕실)		통합 제공 (선택형 ① + 선택형 ②)	2,820,000		
알파룸 스타일업	선택형 ①	복도 팬트리 도어&시스템 가구+통합형 알파룸&다이닝룸+알파룸 장식장	3,000,000	· 기본 알파룸	
	선택형 ②	복도 팬트리 도어&시스템 가구+분리형 알파룸(시스템가구+2연동 슬라이딩 도어)	3,020,000		
119A / 119B	현관 스타일업	선택형 ①	바닥 타일 변경 (600*1200) + 3연동 슬라이딩도어(중문) + 시스템가구(현관창고)	3,380,000	· 바닥 타일 600*600 · 현관창고 도어만 제공 · 복도벽 도배마감
		선택형 ②	바닥 타일 변경 (600*1200) + 3연동 슬라이딩도어(중문) + 시스템가구(현관창고) + 복도 수납장	3,830,000	

타입	옵션 명칭	상세 내용	금액	비고 (미선택시 제공품목)
주방 스타일업	선택형 ①	아일랜드 식탁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 무선충전콘센트) + 싱크볼&싱크수전 업그레이드	5,930,000	· 아일랜드 식탁 미제공 · 3구가스쿠포탑 & 침니형후드 (메인주방) ·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 주방벽타일 300*600
	선택형 ②	아일랜드 식탁 (세라믹 상판 & 유리 장식장 & 인덕션 & 독립형 후드 & 무선충전콘센트) + 주방 상부장 플랩장&매립형 조명 주방 벽&상판 마감재 변경(세라믹타일) + 싱크볼&싱크수전 업그레이드	10,730,000	
비냉장고패키지	선택형 ①	빌트인 비스포크라인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 맞춤형 수납장	7,270,000	· 도배마감 (콘센트 포함)
	선택형 ②	빌트인 인피니트라인 1도어 냉장고 + 1도어 냉동고 + 1도어 와인(또는 김치) 냉장고 + 맞춤형 수납장	17,190,000	
거실 스타일업	기준층	아트월 타일 변경 (600*1200) + 복도벽 고급화(시트판넬)	4,040,000	· 아트월 타일 400*800 · 복도벽 도배마감
	최상층	아트월 타일 변경 (600*1200) + 복도벽 고급화(시트판넬)	4,790,000	
욕실 스타일업	선택형 ① (공용욕실)	벽 타일 변경 (600*600) / 바닥 타일 변경 (300*300) + 도기&수전류 업그레이드 (American Standard) + 비데 추가 (American Standard)	1,780,000	· 벽 타일 : 300*600 · 바닥 타일 : 300*300 · 도기&수전류 : 대림바스 · 비데 : 부부욕실만 설치 (제조사 : 대림바스) · 약세서리류 : 바스텍
	선택형 ② (부부욕실)	벽 타일 변경 (600*600) / 바닥 타일 변경 (300*300) + 도기&수전류&비데 업그레이드 (American Standard)	1,510,000	
	통합형 (공용+부부욕실)	통합 제공 (선택형 ① + 선택형 ②)	3,190,000	
침실4 스타일업	선택형 ① (서재형)	(침실4) 2연동 슬라이딩도어	870,000	· 일반 목창호(기본 침실4)
	선택형 ② (드레스룸 강화)	2연동 슬라이딩도어 + 시스템 가구 + (침실1) 도어 이동 (거실 접면부)	1,690,000	· 일반 목창호(기본 침실4)
알파룸 스타일업	선택형 ①	알파룸 도어 및 가변형 벽체 설치 + 복도 팬트리 도어 & 시스템 가구	1,620,000	· 알파룸 도어 및 가변형 벽체 미설치
	선택형 ②	알파룸 도어 및 가변형 벽체 설치 + 침실3 드레스룸 도어 & 시스템가구	2,120,000	

※ 유상옵션 (스타일업) 유의사항

- 각 타입에 따라 설치 품목 및 위치가 일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스타일업 옵션 내역 중 일부 부분만 개별 선택은 불가하며, 선택형 옵션은 타입별로 정해진 옵션 내에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석재는 자재 특성상 색상 및 무늬가 동일하지 않으며, 타일 및 석재의 나누기 형태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에 따라 가구 길이 및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은 평면 구조 및 현관 크기에 따라 중문 형태 및 크기가 상이할 수 있으니, 평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은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시공상 중문틀 또는 벽 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하부레일은 바닥(마루, 디딤석)과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특성상 개방 시 벽체에서 돌출되어 돌출 사이드는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천정은 매립박스 형태 또는 노출형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스타일업 옵션 미 선택 시 거실 메인벽체 아트월은 일반타일(400*800mm)로 시공되며, 기타 벽체는 실크벽지로 시공됩니다.
- 거실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거실 메인벽체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600*1,200mm)로 시공되며, 임의로 설치면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아트월 및 아트월 면 추가 설치면은 견본주택 및 옵션계약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디자인 패널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선택 여부에 따라 상판 전면 두께 및 주방가구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이음매 간격 및 나누기 형태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미선택 시 주방 벽체는 일반 타일(300*600mm)로, 상판은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일반 싱크볼, 일반 싱크수전이 설치되며 공급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 주방 스타일업 미선택 시 주방 빌트인 3구 인덕션 대신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미선택에 따라 가스쿡탑이 설치된 이후, 인덕션 개별설치에 따른 가스밸브 타공부위, 주방상판 오픈부위 사이즈 및 깊이 등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시 가스쿡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가 준공 이후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배관을 연결할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주방 스타일업 선택 시 아일랜드 식탁에 3구 인덕션이 설치되며, 기본으로 설치되는 가스계량기 이외에 가스 배관 및 밸브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로 인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 부담이며 공급사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116타입의 경우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주방 하부장에 3구 인덕션이 설치됩니다.)
-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비냉장고 패키지&냉장고장 옵션 선택 시 위치 및 열림 방향은 좌우세대 및 타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비냉장고 패키지&냉장고장 옵션 선택 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비냉장고 패키지&냉장고장 옵션 미 선택 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되며, 별도의 냉장고장이 제공되지 않고, 벽체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주방 비냉장고 패키지는 옵션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비냉장고 패키지의 위치 및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어 이에 따라 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 비냉장고 패키지의 냉장고 패널 색상은 납품시점의 삼성전자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스타일업 미 선택 시 타일 (벽 사이즈 : 300*600 / 바닥 사이즈 : 300*300), 기본형 위생도기, 기본형 수전, 기본형 약세서리, 일반형 샤워부스 또는 욕조가 설치됩니다.
- 욕실 스타일업 선택시 욕실별 젠다이 상판(엔지니어드스톤)의 종류는 디자인 계획상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스타일업 선택시 타일 붙임 공법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두드림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알파룸 또는 침실4 스타일업 옵션 선택시 실별 스위치 및 콘센트 위치, 조명 디자인 및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선택형 개별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옵션 명칭	상세 내용	금액	비고 (미선택시 제공품목)	
84A	시스템 가구	선택형 ①	팬트리 2개소 설치 (복도 팬트리 1 / 복도 팬트리 2)	1,060,000	· 미선택시 도어만 제공
		선택형 ②	팬트리 2개소 설치 (복도 팬트리 1 + 침실3 드레스룸) ※ 침실3 붙박이장 옵션과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1,240,000	
	침실1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① (일반형)	2연동 슬라이딩 도어 +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화장대 포함)	2,360,000	· 미선택시 도어/가구 미제공
		선택형② (고급형)	2연동 슬라이딩 도어 +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화장대 포함)	4,300,000	
	침실3 붙박이장		붙박이장 설치 ※ 시스템 가구 (선택형 ②) 와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1,300,000	-
	거실 조명특화	기준층	거실 실링팬 + 리니어 조명 (색 온도 조절 + 디밍 기능 포함)	2,400,000	· 실링팬 미설치 · 기본형 조명 설치
		최상층	거실 실링팬 ※ 최상층 거실 실링팬의 경우, 기준층 거실 실링팬과 다른 제품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980,000	
	주방 가전		전기 오븐	450,000	· 가구 선반 제공
	욕실 복합 환풍기 (욕실1(공용) + 욕실2(부부))		욕실 복합 환풍기 2개소 설치 ※ 욕실1(공용) 및 욕실2(부부) 개별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1,350,000	· 제조사 : 힘펠 · 제품명 : 휴젠티 루미
	84B	시스템 가구		1개소 설치 (복도 팬트리 1)	330,000
침실1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① (일반형)	2연동 슬라이딩 도어 +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화장대 포함)	2,490,000	· 미선택시 도어/가구 미제공
		선택형② (고급형)	2연동 슬라이딩 도어 +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화장대 포함)	5,470,000	
침실3 붙박이장		붙박이장 설치	1,300,000	-	
거실 조명특화		기준층	거실 실링팬 + 리니어 조명 (색 온도 조절 + 디밍 기능 포함)	2,400,000	· 실링팬 미설치 · 기본형 조명 설치
		최상층	거실 실링팬 ※ 최상층 거실 실링팬의 경우, 기준층 거실 실링팬과 다른 제품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980,000	

타입	옵션 명칭		상세 내용	금액	비고 (미선택시 제공품목)
	주방 가전		전기 오븐	450,000	· 가구 선반 제공
	욕실 복합 환풍기 (욕실1(공용) + 욕실2(부부))		욕실 복합 환풍기 2개소 설치 ※ 욕실1(공용) 및 욕실2(부부) 개별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1,350,000	· 제조사 : 힘펠 · 제품명 : 휴젠티 루미
84C	시스템 가구		1개소 설치 (복도 팬트리 1)	280,000	· 미선택시 도어만 제공
	침실1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 ①	2연동 슬라이딩 도어 +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화장대 포함)	2,320,000	· 미선택시 도어/가구 미제공
		선택형 ②	2연동 슬라이딩 도어 +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화장대 포함)	4,540,000	
	침실3 불박이장		불박이장 설치	1,300,000	-
	거실 조명특화		거실 실링팬 + 리니어 조명 (색 온도 조절 + 디밍 기능 포함)	2,400,000	· 실링팬 미설치 · 기본형 조명 설치
	주방 가전		전기 오븐	450,000	-
욕실 복합 환풍기 (욕실1(공용) + 욕실2(부부))		욕실 복합 환풍기 2개소 설치 ※ 욕실1(공용) 및 욕실2(부부) 개별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1,350,000	· 제조사 : 힘펠 · 제품명 : 휴젠티 루미	
103A / 103B	시스템가구	선택형 ①	2개소 설치 (복도 팬트리 1 + 복도 팬트리 2)	1,370,000	· 미선택시 도어만 제공
		선택형 ②	2개소 설치 (복도 팬트리 1 + 침실3 드레스룸 시스템가구) ※ 침실3 불박이장 옵션과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1,360,000	
	침실1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① (일반형)	2연동 슬라이딩 도어 +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화장대 포함)	2,660,000	· 미선택시 도어/가구 미제공
		선택형② (고급형)	2연동 슬라이딩 도어 +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화장대 포함)	5,410,000	
	침실3 불박이장		불박이장 설치 ※ 시스템 가구 (선택형 ②) 와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1,300,000	-
	거실 조명특화		거실 실링팬 + 리니어 조명 (색 온도 조절 + 디밍 기능 포함)	2,400,000	· 실링팬 미설치 · 기본형 조명 설치
주방 가전		전기 오븐	450,000	· 가구 선반 제공	
욕실 복합 환풍기 (욕실1(공용) + 욕실2(부부))		욕실 복합 환풍기 2개소 설치 ※ 욕실1(공용) 및 욕실2(부부) 개별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1,350,000	· 제조사 : 힘펠 · 제품명 : 휴젠티 루미	
116	침실1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① (일반형)	2연동 슬라이딩 도어 +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화장대 포함)	2,840,000	· 미선택시 도어/가구 미제공
		선택형② (고급형)	2연동 슬라이딩 도어 +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화장대 포함)	6,540,000	
	침실3 불박이장		불박이장 설치	1,380,000	-
	거실 조명특화	기준층	거실 실링팬 + 리니어 조명 (다운라이트는 색온도 조절 가능)	2,400,000	· 실링팬 미설치 · 기본형 조명 설치
		최상층	거실 실링팬 ※ 최상층 거실 실링팬의 경우, 기준층 거실 실링팬과 다른 제품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980,000	
	주방 가전		전기 오븐	450,000	· 가구 선반 제공
욕실 복합 환풍기 (욕실1(공용) + 욕실2(부부))		욕실 복합 환풍기 2개소 설치 ※ 욕실1(공용) 및 욕실2(부부) 개별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1,350,000	· 제조사 : 힘펠 · 제품명 : 휴젠티 루미	
119A / 119B	시스템 가구		1개소 설치 (복도 팬트리 1)	510,000	· 미선택시 도어만 제공
	침실1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 ①	2연동 슬라이딩 도어 + 포스트형 시스템가구 (화장대 포함)	2,500,000	· 미선택시 도어/가구 미제공
		선택형 ②	2연동 슬라이딩 도어 + 벽판넬형 시스템가구 (화장대 포함)	5,170,000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 설치	1,380,000	-
	거실 조명특화	기준층	거실 실링팬 + 리니어 조명 (색 온도 조절 + 디밍 기능 포함)	2,400,000	· 실링팬 미설치 · 기본형 조명 설치
		최상층	거실 실링팬 ※ 최상층 거실 실링팬의 경우, 기준층 거실 실링팬과 다른 제품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980,000	
주방 가전		전기 오븐	450,000	· 가구 선반 제공	
욕실 복합 환풍기 (욕실1(공용) + 욕실2(부부))		욕실 복합 환풍기 2개소 설치 ※ 욕실1(공용) 및 욕실2(부부) 개별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1,350,000	· 제조사 : 힘펠 · 제품명 : 휴젠티 루미	

※ 유상옵션 유의사항 (선택형 개별옵션)

- 선택형 개별옵션은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제품 개발에 따라 기능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개별옵션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기타 기기 등의 설치위치,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형 개별옵션 금액은 옵션 선택으로 인하여 시공되지 않는 기본마감 등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선택형 개별옵션의 경우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제품은 각 형별 평면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단열,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임의 지정 불가)
- 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빌트인 가전의 전원 연결을 위해 가구 내 전선 인출구가 타공될 수 있습니다.
- 기능성 전기오븐 미선택시 가구장으로 시공됩니다.
- 거실 조명 특화 미 선택 시 일반 등이 설치되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거실에 설치되는 우물천장 측면(2면)에 조명이 시공되며, 기본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 조명특화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의 조명은 라인조명 특성상 조명간 이음새가 발생하며, 이음새의 위치와 수량은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조명특화 옵션 비용에는 실링팬 설치를 위한 천정 고정 보강 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소비자가 직접 실링팬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천정 보강공사가 필요합니다.
- 거실 조명특화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실링팬은 가동 초반에 진동소음이 들릴 수 있으며 여유공간 내에 높이가 있는 가구, 펜던트 조명, 가전 등 장애물이 있을 경우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줄어 바람이 약해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 조명특화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실링팬은 무선 컨트롤러가 제공되며 별도의 스위치를 연결하여 사용 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무상 A/S 기간에도 A/S 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선택형 개별옵션의 무상A/S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과실로 인한 A/S는 유상처리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공급계약서(또는 옵션계약서) 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정 및 방법

②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납부 시기	계약시	2026-06-19	입주시 (입주지정기간 내)

② 추가선택품목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신협	131-022-817072	코리아신탁(주)

-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추가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가 각각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 계약금 납부 : 계약 시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하시기 바람 [견본주택은 계약금(현금, 수표 등) 수납 불가]
-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예시 : 101동 301호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301홍길동'으로 기재)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금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11 기타 계약자 안내사항

- **입주예정월: 2028년 03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 사업주체는 '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의거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은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임
-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부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정리 절차,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단지 위탁관리용역사)에서 선수관리비를 관리예치금으로 부과하며, 관리예치금을 미납한 경우 열쇠 수령 및 입주가 불가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예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최종 입주예정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 이후 용인시 하수도사업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21.01.25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 개시 약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그 사실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입주자들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 요청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계획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실내 골프연습장 / 피트니스 (단지 내 헬스장) / 어린이 놀이터(2개소) / 문고(작은 도서관) / 주민운동시설 / 경로당 / 관리사무소 / 경비실 외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주차장 : 101, 101T동 ~ 107, 107T동

주차장 주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구획의 높이
	지하1층	지하 2층	
2.70M	2.70M	2.30M	2.10M

※ 현재 계획상 유효높이 기준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진설계 관련 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내진 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내진 등급
내진 능력	1등급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92026-101-0000600 호	141,771,7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특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가 본 공동주택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명주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수탁자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명주산업개발 주식회사임을 계약자는 인지하고 동의한다.
- 수탁자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는 위탁자 명주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명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계약자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 주식회사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명주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단, 분양대상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제반 의무 및 책임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시행수탁자(신탁사)는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또는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자는 반드시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위탁자 명주산업개발 주식회사 또는 계약자는,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명주산업개발 주식회사와 매수인간에 또는 시공사와 매수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
회 사 명	주식회사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동양티피티	주식회사 동양티피티
감리금액	1,736,388,500원	132,000,000원	154,0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 호	코리아신택(주)	명주산업개발(주)	라운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2937831	110111-3022243	190111-000649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10층)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1104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998, 비동 1층

12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공통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건본주택은 현 시점 인허가 완료된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사업주체가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청약 또는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 일반조항에 의거 해약 조치됨 • 당첨자는 계약 체결 시 건본주택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견본세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당사에서 임의로 선정예정임. 견본세대는 준공시 내 부대감제 파손부위, 도배, 도장부위만 재시공하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용인시 도시관리계획(영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원, 경관녹지, 완충녹지, 도로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조성한 후 용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임.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공서는 예비 인증서로 최종 인증시 등급이 달라지거나, 각 항목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목업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부분 재시공 하기로 함. (단, 재시공 및 일부교체 부위는 재료특성상 이색 및 차이가 날 수 있음.) • 각 동별 계단실 등 공용부 및 단위세대 내 대피공간에 물건 등의 적치 행위는 「소방법」에 저촉됨을 인지하시기 바람에 피난 안전 등의 사유로 적치 불가함을 안내하오니 위 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임. • 테라스 세대와 관련하여 "전용사용권"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리규약에 따라 토지 및 공용부분 등의 일부를 특정 세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전용사용부분"이란, 전용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공용부분 등의 일부로서, 테라스 세대 전면의 토지 및 옥상 등 본 분양을 통해 제공되는 테라스 공간을 의미함. • 테라스 세대의 소유자(임대차 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입주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함)는 해당 전용사용부분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가지며, 전용사용권과 관련한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음. 단, 구조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테라스 공간의 유지·보수·관리 비용 및 테라스에 설치된 조명, 수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세대의 소유자(또는 입주자 및 점유자)가 부담하여야 함. • 테라스는 해당 세대의 전유부분이 아니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테라스 세대에 속하거나 부속된 면적으로 공부상에 등재할 수 없으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함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테라스는 동별, 층별, 타입별 테라스의 위치 및 면적, 형태가 서로 상이하며, 이는 설계계획에 따른 사항으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라스 세대는 공용 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입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테라스의 유지·관리 및 사용 중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해당 세대의 입주자 및 점유자에게 귀속됨. • 테라스에서는 건축물 구조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층·개축, 구조 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 또는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절대 하여서는 아니되며, 마감재 변경, 추가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상하좌우로 이웃한 모든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상기의 행위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해당 세대에 귀속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테라스는 인접세대 또는 상층 세대에서 일부 조망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테라스 세대와 인접한 중·저층 세대에는 테라스 공간의 생활 소음, 조리 및 야외활동에 따른 기류 방향의 확산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생활불편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나 시공사의 책임이 없으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테라스동 타입(84C/103A/103B)의 경우 단지 내 대지 레벨 차이를 활용하여 테라스를 특화 도출한 평면 계획으로 후면부로의 채광, 환기는 불리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함.(103B 타입은 테라스가 없음) • 테라스에는 세대 간 경계벽,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책임은 소유자(또는 입주자 및 점유자)에게 있으며,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시 해당 세대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특히 세대 간 경계벽과 난간은 단지 전체 경관과 관련된 시설로서 임의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없음. • 테라스 출입 시설내외 단차 및 빗물 유입 방지를 위한 창호 턱 등으로 인해 발이 걸리거나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 바람. • 테라스 바닥 마감은 석재(포천석)로 마감되며, 테라스 내부 우수드레인은 미시공되며 테라스 우수드레인은 외부에 설치되어 미관 저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감도 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단지 인근 영덕동 1116번지 일대에 용인서부소방서 이전·신축사업(사업기간 : 2025년~2029년(5년간))이 진행중이며, 소방서가 완공되는 시점에 이영미술관삼거리 교차로의 교통처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단지는 골프장(태광CC)으로부터의 타격소음 영향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단지 북측 경계부에 방음벽(높이 2M)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방음벽의 세부 사양과 구체적인 디테일은 시공상 여건이나 설계 보완 등에 따라 동등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청약 및 계약 체결 시 위와 같은 방음벽의 설치 및 설계 변경 가능성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지는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단지가 아니며, 본 사업지는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약 83만평)과 약 2km(차량 5분 거리) 이격된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로서,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계획과는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람. • 본 사업지 인근 태광CC와 인접한 해당동은 빛 반사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계약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보증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 동의서를 청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1)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2)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3)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단지명 (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명칭은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행사'의 브랜드(라온프라이빗 포함)와 동명칭(동수)은 향후 "시행사" 혹은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 유상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발코니확장 공사 및 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확장을 포함한 계약자의 옵션계약사항은 세대별 개별계약에 의하여 진행하며, 추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지 시 시공자가 시공한 사항의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 후 해지가 가능함. • 시공자는 옵션계약과 관련한 대금의 납부와 관련한 사항을 별도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으며,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의거한 납부일자에 금액을 납부해야함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음. • 필로티 옆, 상부 세대는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 위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필로티 위층세대의 경우, 피난식 하향사다리가 설치되지 않음.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공용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면에 거푸집 핀제거 부위 특성상 공보 부위 등 모든 면에 콘크리트 먼처리 및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 • PD, EPS, TPS실 등 내측면 조적 및 철판 마감면, 콘크리트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 또는 도장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지반레벨 극복을 위하여,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 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입주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가 제외 될 수 있음

	<p>등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관리비는 통합 산정되며, 입주 후 관리사무소에서 진행 예정임. •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입주 후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개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시 기존 설치 마감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제외 될 수 있음. •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개시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단지 내에 지상 혹은 지하에 공공시설(기반시설 등)이 설치될 경우, 등기부상에 별도의 등기사항설정(구분지상권 등)이 표시될 수 있음 • 단지 내 시 (공용)보도를 포함한 모든 시설물은 준공 이후 입주민 혹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구성된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됨.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사다리차 이사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입주 전 이사업체 및 관리사무소에 이사 여건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또는 암반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제·개정, 관계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p>실내 공기질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p>인허가 (설계변경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중 현장여건 반영 및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 경미한 변경사항 "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키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교해, 교육 등)의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열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분양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모형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의 사항으로 향후 변경, 연기,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실내용스피너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람,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p>견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는 84m²B타입, 119m²A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홈페이지 CG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품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은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84m²A, C 타입은 건립되어있는 84m²B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되며, 103m²A, 103m²B, 116m², 119m²B타입은 건립되어있는 119m²A 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면형태 및 가구형태(일부 유상 또는 무상, 기준층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등의 CG 등을 통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향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평면형태와 다르게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 제조 회사의 도산, 신제품의 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또는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 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수량, 사양,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

	<p>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 등을 포함하여 주변 환경과 부지 내 계획에 따른 고저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 포함)에 준하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주택법 제60조 3항에 따라 견본주택 내 평면도(설계도면), 시방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도서 열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절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으로 시공된 부분은 전시용품목과 연관된 각종 배관, 배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치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사업행위(변경포함) 도서 기준으로 하고,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의 판단은 KS 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조경 등), 전시조명 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이므로 본공사 시 관련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 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 유상옵션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설비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현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홀통, 콘센트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카페테리아 내에 설치된 테라스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공된 것으로, 실제 세대의 테라스 면적, 유리 난간 시공 형태 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p>단지 및 주동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의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옥상장식물,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조경 및 기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단지 주변 도로 및 지형은 일부 간소화하여 표현하였으며, 또한 단지 주변 도로와 교통 시설물 등은 인허가 당시의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앞에 계획된 문화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 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현재 측량 결과에 따른 설계변경(대지면적 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현황 측량 결과에 따라 사업부지 경계 레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도레벨, 상가진입레벨 등이 달라지고 계단, 경사 등이 추가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준공 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 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본 단지는 등별로 차량 및 보도 이동 시 이동거리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등의 주변레벨 관계, 동출입구의 위치, 단지 내외부 이동동선 및 단지 주변의 주요시설과 거리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 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 • 사업시행인가변경 시 기인가도서 상의 내용과 견본주택에 전시된 사항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인허가 진행과정 중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계약 체결 시 또는 이후 해당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후 조경 유지 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 손괴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부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수목고사와 상관이 없는 사항임.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미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차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장 등), 조경도자인, 비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등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동주택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p>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에 적용된 외관 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음. • 각 동 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동조명, 단지홍보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경관조명(설치시)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지 인접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반사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CCTV와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루나가든과 인접한 해당동은 빛 반사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특성상 인접한 도로에서의 도로교통소음과 인접한 골프장에서 골프 타격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입구 문주와 인접한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은 조망권, 빛 간섭 등 이 발생할 수 있음.
<p>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차량출입구는 대지 동측 약 20M 내외 도로와 남측 15M 도로를 통해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입니다. • 지하주차장 부출입구 진출입시 시립영덕어린이집 등 하원 시간 및 더빛교회 출입에 따른 상호 간섭 및 출입로 통행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부족동 활용성 및 하자 예방 등의 사유로 위치, 면적, 층별 내부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전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구조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지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 할 수 있음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층수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지하 주차장 유효천정은 실시공 시 각종 배관, 트레이, 조명 스프링클러 등의 설치에 따라 층고유효높이가 일부 차이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 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26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구조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수량 및 위치 등은 달라질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법정 기준에 맞추어 2.3m 이상 설계되었으며,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음. • (단, 각종 배관/배선에 따라 차량통행로 및 주차구획의 유효높이가 일부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용도별·동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바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지정주차구획운영·통제는 관리주체 책임임.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계단실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경비실에서 주차관제시스템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남측 주차관제시스템 위치에는 경비실이 설치되지 않음.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골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출입구 인근 세대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빛공해,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상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부스 결로 방지 등을 위한 관리 책임은 입주예정자협의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음. • 공동주택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벽체구획은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변경, 삭제될 수 있음.
<p>부대 복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 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계획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성능 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 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됨.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자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차량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건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부대복리시설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분리 및 보관시설(생활폐기물 용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위치 및 개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일부 조정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인접한 세대 계약자는 이 사실을 건본 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p>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민회의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됨.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회의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단지 내에 생활폐기물 분리 및 보관시설(생활폐기물 용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주민회의실 등)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 등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됨.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주민회의실 등)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음. • 속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등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과 엘리베이터홀 천정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공동주택과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 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등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와 별개로 분양신고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분양되며, 수분양자는 근린생활시설의 유지관리 의무책임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시설개선, 유지보수 등의 관리업무는 수분양자에게만 해당되고, 사용검사 이후에도 본 단지 또는 주무관청의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로는 경로당, 경비실, 관리사무소, 문고(작은도서관), 회의실, 맘스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음.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법률의 개정, 기타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세대 평면, 가구 및 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실제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과 창호개폐방향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음.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세대의 천장 기준 높이는 2.3m로 시공됨. (욕실·발코니·우물천정 제외) → 단, 본 공동주택 84C, 103A, 103B 주택형 세대의 "거실 / 주방 / 복도" 공간의 천장 기준 높이는 2.4m로 시공될 예정임. → 단, 본 공동주택 최상층 세대의 경우, "거실" 공간의 천장 높이는 최대 3.5M 범위에서 시공될 예정임. •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요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람. • 세대 내의 실위치와 출입문폭, 보일러 시설 등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가스배관과 후드배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 욕조, 샤워부스는 바닥단방이 시공되지 않음. • 불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및 빌트인 가전제품 등으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 • 욕실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 계층(ABS) 도어로 시공됨.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 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음. • 인조 대리석, 인조강화석, 타일 등 석재, 타일류와 주방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바닥재는 목재재질로 이루어진 마루이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장 후면과 욕조가 접합 벽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미시공 됨.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배관, 가스밸브,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 및 제품, 사양 등은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발코니, 테라스 도장·마감재질과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침실 목장호 문선은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부위는 디자인월 마감으로 출납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콘센트와 배선이 노출됨.
- 현관 마루갑돌과 주방가구 상판의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일부벽체는 석고보드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함.
- 세대 내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장고는 상부세대 및 당해층 설비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해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당 공동주택은 대형창호가 적용되어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유리 파손 시 상당한 교체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대해 분양사업자, 사업주체, 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노출벽면마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건물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계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세대 및 공용부 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 고정방법 등)
- 욕실 천정 안쪽 상부면은 미장 및 콘크리트 면처리 등의 마감이 별도로 없음.
- 욕실 천정 내부 천정은 단열재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마감이 별도로 없음.
- 각 세대 및 공용부 PL창호 흔들림이라는 명칭으로 하자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창호 탈락 등의 현상으로 확산되지 않으므로 이를 하자로 요구할 수 없음.
- 테라스 세대 상부 낙하물에 대한 방지망 및 캐노피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음.
- 도배 시공 시 기후 및 계절변화에 의한 초배치 처짐현상(네바리 테이프)은 하자가 아님.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현관 창고, 비화장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보일러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우 마감 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 난방이 시공됨. 욕실의 욕조하부,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음.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 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테라스 타입의 경우 거실(실내)과 테라스(실외)의 바닥 마감높이가 창호를 경계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음.
- 103A, 84C 타입의 테라스와 84A, 84B, 116, 119A, 119B 타입의 1층 세대에 접한 옥상 바닥은 설계상 발생하는 공간으로서 전용공간이 아님에 따라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한 행사 및 사유화하여 사용이 불가하고, 공용설비 및 시설물유지 보수를 위한 진입요구 시 개방하여야 함에 따라 생활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긴급상황 시 피난동선으로 활용되므로, 물건 등을 적치하지 않고 피난 동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함.
- 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공간은 계획된 용도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 진동)이상 및 효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해당 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 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공간은 평면구조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출입문 유효폭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의 크기는 현장 시공 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건축법규에 따라 각 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됨. (1층 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의 경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각 세대 침실 내부에 세대분전함 또는 세대단자함의 개별로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음.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음.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현장 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 개선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의 동등 수준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대피공간 조명은 본 공사시 사용성 및 조도 개선 목적도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음.
-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약세사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기 바람.
-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 할 수 있음.
-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함.
-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유지 등에 따라 미입추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범 및 경보알람이 작동하지 않음.
-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주방가구, 쿡탑, 개수대, 약세사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음.
- 안방, 침실에 설치되는 통합형 전자식스위치의 온도조절기 및 조명스위치는 동일한 색상일지라도 제조사별 제작 및 도색방식이 상이하여 서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음.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공동주택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됨.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현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바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내 소방시설물 배관작업으로 인해 각실 커튼박스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미건립 세대인 84C타입과 103A, 103B타입의 경우 주방 창호가 미설치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 타입의 경우, 풍압 실험 등의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계획된 창호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로 창호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을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 거실 창호의 경우, PL창 특성상 상부창과 하부창이 별도의 창호로 연결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구조보강 등을 사유로 창간 간격 추가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음.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됨.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테라스 세대의 가스배관은 단독 입상이 형성되며 앞 발코니 외벽을 통해 인입 예정이므로 외부 입면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테라스 타입의 경우, 가스 계량기가 안방 발코니에 위치할 수 있음.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기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됨.(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음.
- 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음.
- 본 공중주택은 가스쿠탄 설치 및 이용 등을 위한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할 예정이며, 난방과 급탕을 위한 지역난방방식을 활용하는 공급 계획이 적용됨.
- 본 공사 시 세대 내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 위치를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예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벽면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설치 위치 및 장소는 시공 여건에 따라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 단자함은 세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트메이션)의 기능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 맨홀(한전주) 등 인입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사업자 협의 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 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 2 등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동통신안테나 및 중계기, 지하층에 이동통신용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단, 설치 위치 및 수량은 실시공시 이동통신설비업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기기계 설비

구 분		설치 위치
옥외 안테나	옥탑층	해당사항 없음
중계 장치	지하1층	EPS / TPS (2개소)

-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벽체구획은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변경 삭제 될 수 있음.
- 옥외 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증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물의 발전기실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점검 등으로 인한 기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 될 수 있음.
-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중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 될 수 있음.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중 세대별 접근 거리가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세대 경관 조명에 의한 빛 반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및 지하층에는 경관조명, 안테나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 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최상층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부대시설 태양광 집광판 설치로 인해 일부 공동주택에는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 저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 램프 진출입로에 설치되는 출차경광등은 최소 50dB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본주택 안내**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건본주택



- 위치안내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454-9
- 운영기간 : 2026.03.20.(금) ~ 분양 종료 시
- ※ 분양일정에 따라 건본주택의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건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10:00~17:00
- ※ 정부방침에 의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 건본주택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본주택 입장 및 상담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PC, 모바일)

분양문의

■ 공식홈페이지 : <https://www.yip-raon.com>

■ 용인 플랫폼시티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 ☎1533-4077 (10:00 ~ 17:00)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 및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